

#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88
----------	------

2020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출요지

### 1. 제출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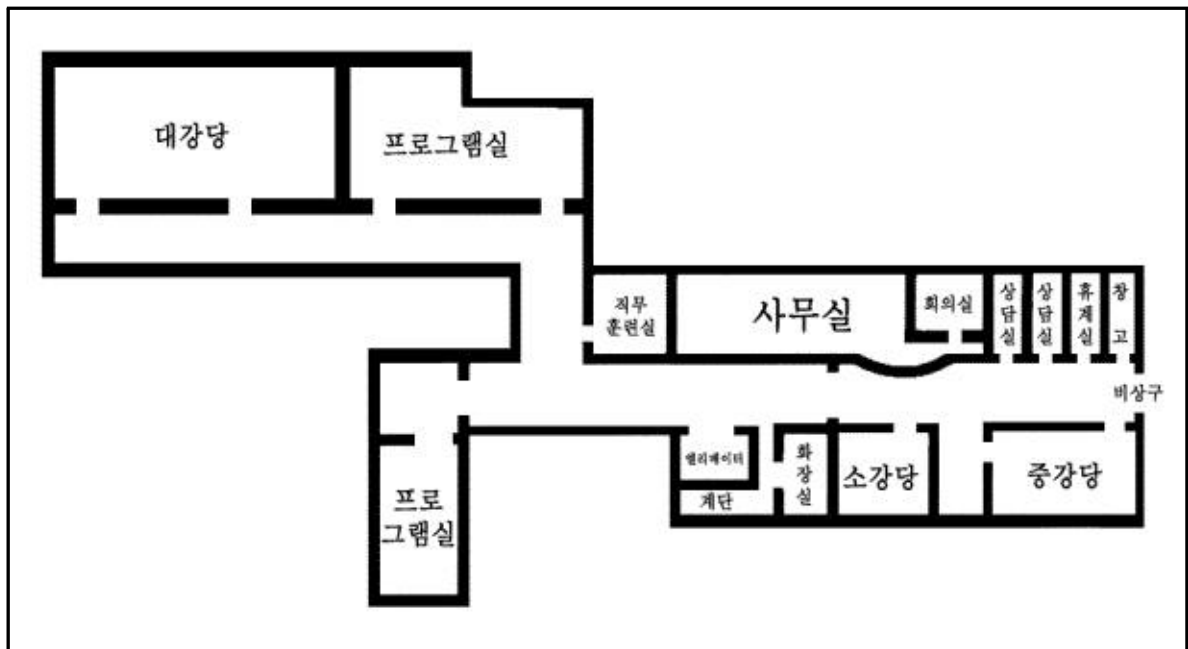
- 가. 그동안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 확대를 모색하고자, 지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나. 향후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의 민간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다.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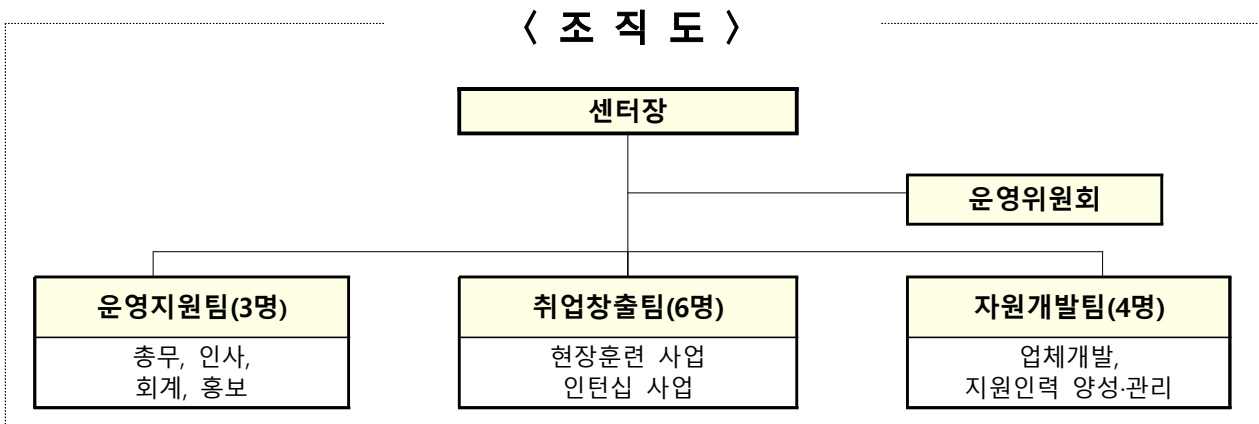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민간사업체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인턴십 참여 지원
- 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171-1 본관 2층(舊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시설규모 : 1,591.86㎡
- 시설현황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1년~'23년)
- 위탁사무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중심 직업훈련, 인턴십 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 훈련·고용 업체 개발·관리
- 발달장애인 훈련·고용 지원인력 양성·관리
- 지원사항 : 지원 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1,450백만원('21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조직 및 인력구성(안): 14명(센터장 1, 직원 13)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8106, '20.4.14.)
- 2020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6027, '20.5.13.)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지난 2년간 발달장애인이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받은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 업체의 호응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과확대가 기대됨

-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우수자원 확보 등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어,
-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위주의 일자리 지원에서 민간 일자리지원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지원체계를 보완·강화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의 제출 사유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던 커리어 플러스 사업의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sup>2)</sup>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에의 법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sup>3)</sup>제1항제3호는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  
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의 법적  
인 타당성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4)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3 보조금 사업의 실적 검토

- 동 민간위탁동의 대상 사무는 2017년 임시운영(6개월, 성동구) 및 2018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개요>

- 운영목표: 발달장애인 100명 훈련/80명 취업, 70명 인턴십 참여
- 위 치: 강남구 삼성동 171-1 본관 2층 (舊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대 상: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조직구성: 센터장 외 3개팀 14명
- 사업내용: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현장중심 직업훈련, 인턴십 참여 지원
  - 현장중심 직업훈련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先배치 後훈련
  - 발달장애인 인턴십 : 민간기업에 인턴십 참여 후 정규 고용
  -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양성 및 파견

구분	2017	2018	2019
사업내용	사업 원년 (성동구 사업) ●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센터 시범운영 개소(성동구) ● 현장중심 직업훈련 사업 기반설계 - project search 벤치마킹 - 장애인일자리시장 진입을 위한 선점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서울시 사업으로 전환 ●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따른 시 사업으로 편입 ● 사업 독립적 운영 system 가동 - 타 기관과의 차별화 추진 - 직무지도원 고용 안정화 추진 - 기업체와의 신뢰 형성	평생지원 현장중심 직업훈련 사업체계 완성 ●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 현장중심 직업훈련 시스템의 체계화 ● 발달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지원 체계 확보 - 취업 이후 평생고용 안정화 방안 확보
운영법인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년 예산: 1,450백만원(인건비 513, 사업비 893, 운영비 44)

※ '18년 사업비 : 500백만원, '19년 사업비 : 500백만원

출처: 장애인복지정책과

- 그러나 동 사업이 기존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음.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공공일자리,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보호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고용' 지원체계 병행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커리



어플러스센터가 장애인 ‘일반고용’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을 통해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함.

## 가. 사업의 특성

- 커리어플러스 센터의 사업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성으로 ‘先배치 後 훈련’을 들 수 있음. 이는 발달장애인의 발달특성에 맞추어 일자리를 선택하고 해당 업종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이후 보호고용이 아닌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커리어플러스 센터가 목적하는 사업성과가 드러난 바 있음.

### ※ 적성직무·직종 지원 사례

- 미화업무로 취업한 발달장애인이 화분에 관심 갖고 가꾸기 시작하여 원예관리로 직무 전환, 물류포장업무 수행 중 물량 감별능력이 발휘되어 상품감별사로 활동

- 특히, 다수의 발달장애인 대상의 직업훈련이 발달장애인의 발달특성을 일괄적으로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집중적인 훈련을 했던 것에 반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적성직종으로 취업기회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sup>5)</sup>은 직업재활시설에서 곧바로 일반고용으로 전이가 어려운 경우, 전이 중간지대에서의 취업경험을 통해 전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일반기업체와 직업재활시설의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이곳에서의 취업경험을 통해 일반고용으로 전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5) 남용현, 이미정, 신직수, 윤경인 (2017).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노동시장 전이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51-56

-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양질의 사업장과 연계되어 ‘先배치 後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임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관찰됨.

- 직업재활시설 임금(평균 423천원, '18년) 대비 고임금(평균 913천원, '20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훈련·고용 참여업체
신 세 계	8개소	10개소	18개소	신세계푸드(식품제조 등), 올반(요식업), 보노보노(요식업), 데블스도어(요식업), 이마트 에브리데이(편의점)
롯데	1개소	6개소	8개소	롯데마트, 하이마트, 롱스(헬스&뷰티 스토어)
동 원	2개소	2개소	10개소	동원홈푸드(식자재 유통), 동원F&B(식품 생산·유통)
기 타	11개소	16개소	10개소	아름다운 가게(판매), 도서출판 점자(출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쇄사업소(인쇄) 등

출처: 장애인복지정책과

- 동 민간위탁 사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先배치 後훈련’ 후 고용이 유지되어 장애인 고용이 보호고용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 이때 ‘先배치 後훈련’한 기관에서의 취업유지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살펴보면, 2018년 취업자 46명 중 8명이 24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취업자의 경우도 12개월 이상 취업유지(23명)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취업자)	계	기간(개월)						고용 유지
		1~3	3~6	6~12	12~18	18~24	24개월이상	
계	128	17	24	30	33	16	8	79
2018년	46	1	3	8	10	16	8	22
2019년	63	8	10	22	23	-	-	40
2020년	19	8	11	-	-	-	-	17

출처: 장애인복지정책과

- 예산액의 크기에 비하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의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임.

## 나. 이 외의 주요사업

- 동 민간위탁 사무는 지원인력 양성·파견: 직무지도원(잡코치), 근로지원인 양성 및 파견도 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현장훈련에 직무지도원<sup>6)</sup> 파견, 직무분석 및 지도, 취업 연결 되도록 지원하고 인턴십 사업에 근로지원인 배치, 직장생활 적응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며 직무 투입 전 직무교육·현장실습, 근무상황 모니터링, 보수교육 등 양질의 지원인력 확보 및 기존인력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직무지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무지도원 양성사업과 차별성 및 더 높은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무를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훈련 및 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사무의 실적이 타 시·도의 발달장애인 취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지도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민간사업체에 배치되어 현장훈련시 직무지도원(잡코치)를 파견하여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장생활 지원, 직무기술에 대한 지원, 사회성 지원, 문제행동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 주요업무
  - 장애인이 사업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기간 동안(또는 취업이후에도) 해당 직무수행 지도
- 근무시간
  - 평일 하루4시간~8시간 (09:00~18:00사이, 주5일)
- 근무조건
  - 시급 8,350원(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기간
  - 자율선택(현장훈련 회차당 평균 3주~7주,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본인 여건에 맞게 훈련일정 선택 가능)
- 자격요건(아래의 사항중 1개만 해당되면 됨)
  1.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3.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6.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7.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가능합니다.(단, 1년간 유효)

출처:장애인복지정책과

- 집행부는 아래와 같이 차별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발달장애인 중심의 교육진행
  - 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 역할 차이

###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차별성>

구 분	장애인고용공단	커리어플러스센터
유 형	공급기관	수행기관
교육 프로그램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과 고용 근로지원서비스 이해(보조자 역할)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장애인과 고용 근로지원서비스의 이해(교사 역할) 사업현장의 이해(현장사례 및 실습)
관리	수행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 (지침 : 연간 보수교육 2회)	직접 관리 (수시 모니터링)

출처:장애인복지정책과

-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2018년은 외부강사 위주, 2019년 부터는 내부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의 경우 2019년 4회기 80시간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2020년에는 1회기 20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양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지원인력(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		횟 수	강 사
2018년	역량강화 교육 (직무지도원)		24회기 (47시간)	김성남, 정유진 (발달장애인지원 전문가 포럼)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김경애 (발달장애인권익연구소)
2019년	보수교육(사례연구) (직무지도원)		11회기 (22시간)	성희선 (커리어플러스센터 센터장)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인의 이해 / 장애인과 고용의 이해 / 근로지원인의 역할과 업무	4회기 (80시간)	성희선 (커리어플러스센터 센터장)
		장애부모운동의 이해		김종욱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근로기준법의 이해		손창배 (노무사)
		발달장애인 고용관리		윤기만 (신세계 푸드 과장)
실습 및 사례논의			현장지원팀	

구 분	프로그램		횟 수	강 사
2020년	신입 직무지도원 교육 (센터소개, 직무지도원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현장실습 및 사례논의)		3회기 (60시간)	성희선 (센터장)
				유진옥 (운영지원팀장)
				강수지 (취업창출팀장)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인의 이해 / 장애인과 고용의 이해	1회기 (20시간)	성희선 (센터장)
		장애부모운동의 이해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근로기준법의 이해		박문배 (노무사)
		발달장애인 고용관리		윤기만 (신세계 푸드 과장)
		근로지원인의 역할과 업무 / 실습 및 사례논의		강수지 (취업창출팀장)

출처:장애인복지정책과

- 이에 발달장애인의 ‘先배치 後훈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강화방안 및 양성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종합의견

- ‘先배치 後훈련’을 통해 보호고용이라는 장애인고용의 오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일반기업체와 직업재활시설의 중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이곳에서의 취업경험을 통해 일반고용으로 전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이러한 업무는 민간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때, 보다 유연한 직무개발, 취업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민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사무의 실적이 타 시·도의 발달장애인 취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직무지도원과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양성과정 등에 있어서는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88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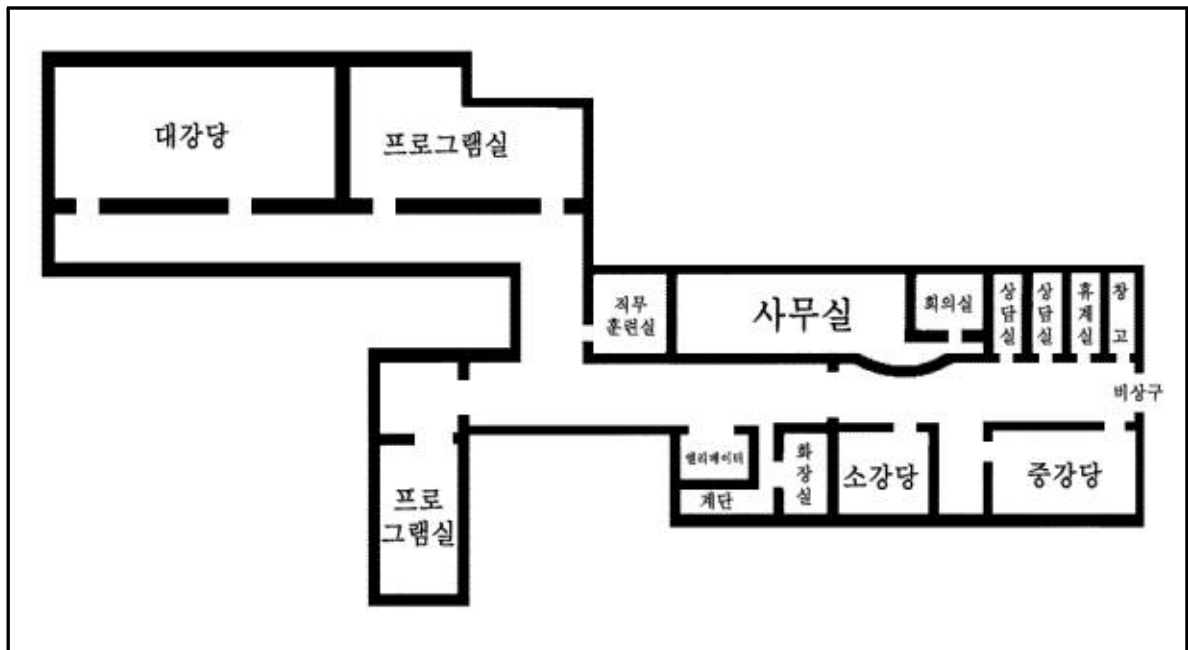
- 가. 그동안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민간기업으로의 취업 확대를 모색하고자, 지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나. 향후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의 민간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 다.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민간사업체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인턴십 참여 지원
- 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171-1 본관 2층(舊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시설규모 : 1,591.86㎡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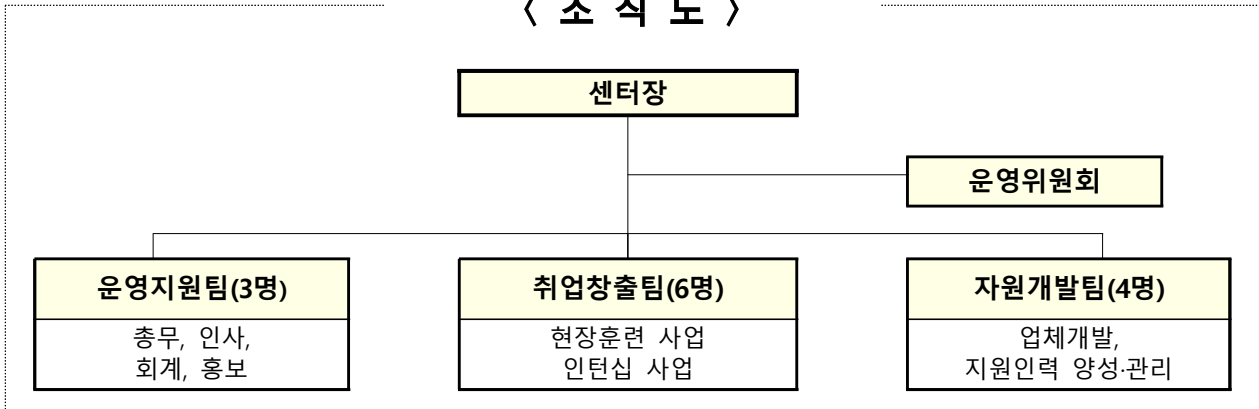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1년~'23년)
- 위탁사무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중심 직업훈련, 인턴십 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 훈련·고용 업체 개발·관리
  - 발달장애인 훈련·고용 지원인력 양성·관리
- 지원사항 : 지원 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1,450백만원('21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조직 및 인력구성(안): 14명(센터장 1, 직원 13)

〈 조직도 〉



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8106, '20.4.14.)
- 2020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6027, '20.5.13.)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지난 2년간 발달장애인이 민간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받은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 업체의 호응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과확대가 기대됨
-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우수자원 확보 등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어,
-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위주의 일자리 지원에서 민간 일자리지원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지원체계를 보완·강화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원경진 (☎ 2133 - 7466)